

[]외래 []입원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	진료기간	[]부터 []까지
환자 성명	[]	야간(공휴일)진료	[] 야간 [] 공휴일
진료과목	[]	병실	[]
질병군(DRG)번호	[]	환자 구분	[]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		

항목	급여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전액	선택	선택진료	선택료 외	⑦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⑤)	[]
[기본항목]							
진찰료	[]	[]	[]	[]	[]	⑧ 환자부담 총액 (①-⑥)+③+④+⑤	[]
임원료	[]	[]	[]	[]	[]	⑨ 이미 납부한 금액	[]
투약 및 조제료	[]	[]	[]	[]	[]	⑩ 납부할 금액 (⑧-⑨)	[]
주사료	[]	[]	[]	[]	[]	⑪ 납부 현금영수증 한 금액	[]
마취료	[]	[]	[]	[]	[]	현금 합계	[]
치치 및 수술료	[]	[]	[]	[]	[]	납부하지 않은 금액(⑩-⑪)	[]
검사료	[]	[]	[]	[]	[]	현금영수증()	[]
영상진단료	[]	[]	[]	[]	[]	신분확인번호	[]
방사선치료료	[]	[]	[]	[]	[]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
치료재료대	[]	[]	[]	[]	[]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
재활 및 물리치료료	[]	[]	[]	[]	[]	[]	[]
정신요법료	[]	[]	[]	[]	[]	[]	[]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	[]	[]	[]	[]	[]	[]
[선택항목]							
CT 진단료	[]	[]	[]	[]	[]	선택진료 신청 [] 유 [] 무	[]
MRI 진단료	[]	[]	[]	[]	[]	[] 의원급·보건기관	[]
PET 진단료	[]	[]	[]	[]	[]	요양기관종류 [] 병원급 [] 종합병원	[]
초음파 진단료	[]	[]	[]	[]	[]	[] 상급종합병원	[]
보철·교정료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오양금

상호						
[65세 이상 등 정액]	[]	[]	[]	[]	[]	전화번호 []
[정액수가(오양병원)]	[]	[]	[]	[]	[]	사업장 소재지 []
[정액수가(완화의료)]	[]	[]	[]	[]	[]	
[질병군 포괄수가]	[]	[]	[]	[]	[]	대표자 [] [인]
[합계]	①[]	②[]	③[]	④[]	⑤[]	
[상한액 초과금]	⑥[]					년 월 일

항목별 설명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오양급여 여부,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 ~ 2500원, 0% ~ 15%) 등
- 입원 본인부담률: 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등
※ 식대: 50%(의료급여는 20%)
CT·MRI·PET: 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오양급여(선택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본인부담률
※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원(201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 환자가 내는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전액 본인부담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오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합니다.

4. "질병군 포괄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오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병군 입원진료에 대하여 해당 입원진료와 관련된 여러 의료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정하여 오양급여비용을 결정할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질병군의 입원진료와 관련된 의료행위라도 비급여대상이나 이송치료 등 포괄수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위 표의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란에 합산하여 표기됩니다.
1.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 주(註):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70g/㎡]